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탈북민 학생 대학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2012. 3. 1.
 개정 2014. 6. 1.
 개정 2016. 3. 1.
 개정 2018. 3. 1.
 개정 2020. 4. 13
 개정 2021. 8. 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탈북민 학생이 대학생활 및 학습활동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대학생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②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2.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

③ “외국인 학생”이라 함은 외국 국적으로 본 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④ “탈북민 학생”이라 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중 본 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지원)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탈북민 학생의 교육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강신청 지원 :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탈북민 학생이 소속된 스쿨 혹은 학과는 의사소통의 어려움등으로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탈북민 학생이 도움을 희망할 경우 개별상담과 관련 스쿨(학과)의 협조를 통해서 수강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수 있다.

2.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탈북민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학습멘토링 관련

가.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탈북민 학생이 학습멘토링을 요청할 경우 학습도우미 모집 및 선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나. 전공 내 학습 동아리를 통한 협력 학습 멘토링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상담 등)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탈북민 학생의 원활한 대학생활과 진로 및 취업을 위해 다음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탈북민 학생의 경우 근로장학생 우선 선발을 통해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2.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탈북민 학생의 대학생활 고충 상담 (학생상담 부서와 연계)
3.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탈북민 학생의 진로 및 취업 상담 & 추후지도 (취업담당부서와 연계)

제5조(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탈북민 학생 지원업무 관련 부서 및 담당자)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탈북민 학생 지원업무는 학생담당 부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총괄하며 관련 담당자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탈북민 학생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우며 이들이 차별 없이 대학생활에 적응해 나가도록 지원한다.

1.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탈북민 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총괄
2.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탈북민 학생 교육 및 대학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